

	규정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TWP-B218
		제정일자	2015. 03. 16.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1
		페이지	1/4

목 차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대상
 - 제3조 구성
 - 제4조 심의사항
 - 제5조 소위원회
 - 제6조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 제7조 결과의 공시
 - 제8조 수당 등 지급
 - 제9조 기타
- 부 칙

작성부서	입학관리센터	제정일자	2015. 03. 16.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담 당	입학관리센터장	교무부총장	총 장
서 명				
일 자				



규정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문서번호	TWP-B218		
제정일자	2015. 03. 16.		
개정일자	2018. 02. 19.		
제정번호	1	페이지	2/4

	규정	문서번호	TWP-B218
		제정일자	2015. 03. 16.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의거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의 적용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실기고사(예·체능)는 예외적으로 적용에서 배제한다.

제3조(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입학홍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내부위원은 입학홍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홍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02.19.>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홍보처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2018.02.19.>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규정	문서번호	TWP-B218
		제정일자	2015. 03. 16.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개정일자	2018. 02. 19.
		개정번호	1
		페이지	4/4

제6조(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의 공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8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